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구단50372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redacted]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114,990원, 지방교육세 4,597,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0.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인바, 2013. 5. 30.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취득 이후 제1분사무소를 '부천시 원미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7

B'에서 [redacted]시 [redacted]구 C'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2. D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C 대 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0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3.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200,000원, 지방교육세 8,12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분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후 2013. 6. 30.자로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건물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4. 6.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바, 위 건물사용계획서와는 달리 원고가 ① 2013. 6. 30. E조합(이하 '이 사건 E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무상 임대하여 임차인이 'F의원'(이하 'F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② 2013. 6. 2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를 무상 임대하여 임차인이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와 2층 일부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7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27,114,990원, 지방교육세 4,597,1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원고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건 E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F의원에 내원한 신장투석 환자를 비롯한 일반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G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E조합 및 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와 2층 일부는 원고가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7

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정세율 경감하는 것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일정세율 경감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그 임차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E조합 및 G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무상 임대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7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④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 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끝>